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8.

정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7. 15.

정희용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 : 2024. 7. 1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

○ 제418회 국회(정기회)

- 제1차 정무위원회(2024. 9. 25.)

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○ 제427회 국회(임시회)

-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(2025. 7. 22.)

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○ 제427회 국회(임시회)

- 제2차 정무위원회(2025. 7. 30.)

상정, 소위심사보고,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정희용의원)

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등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최 기 도)

□ 현행 보훈 관련 법령은 생계가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·보훈보상자

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을, 5·18민주유공자·특수
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
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지급함.

○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
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
·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(매월 최소 24.2만
원~최대 37만원)되는 수당임.

○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
50% 이하이면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5·18민주유
공자·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참전유공자·고엽제
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(매월 10만원)되고 있음.

□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는 현행법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대상
이 될 수 있는데, 현재 5·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
유족에게는 생계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, 참전유공자의 경우
본인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
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
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
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참전유공자에

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.

- 현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고령일 가능성이 크며, 참전유공자 사망 시 생계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배우자의 생계곤란이 심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.
- 또한, 참전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희생이 없는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음.
- 참고로,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, 연간 약 2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.
- 한편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, 생활조정

수당, 생활지원금 등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금의 경우 보훈가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유족에게도 지급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.

- ☐ 반면, 기획재정부는 참전과 무관한 배우자에게까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보상하는 보훈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4. 대체토론 요지

없 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강민국위원)

- “위원회 대안”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(대안반영폐기).

6. 찬반토론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